

고 발 장

고 발 인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22(서교동)

대표자 이사 임순례

피고발인 신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OO, 서울축산(성남동

OOOO번지)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을 동물보호법 위반(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으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피고발인은 2018. 5. 25.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도살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개 60여 마리를 더운 날씨에 면적이 35㎡도 되지 않는 임시 철망에 가둔 채 물과 사료를 급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갇혀 있는 개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고발인은 동물 복지 향상과 동물권 증대를 위하여 동물 보호에 관한 교육 사업, 각종 동물 보호운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입니다.

나. 피고발인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00에 있는 서울축산에서 개를 도살하여 판매하는 업자입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피고발인은 2016. 12. 13. 성남시장과 모란가축시장 상인회가 협약한 “성남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에 참여하여 ‘상인은 모란가축시장에서 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가두거나 도살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된 보관·도살시설의 전부를 자진 철거한다’는 내용에 합의·서명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성남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나. 위 협약에 참여한 다른 모든 상인이 협약 내용에 따른 이행은 마치고, 불법 도축시설 및 건축물 등을 철거하였으나, 오로지 피고발인은 자진 철거한다는 협약 내용을 위반하여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기존 영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다. 이에 성남시 중원구청장은 2017. 8.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피고발인에 대하여 위법 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발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7. 12. 7.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라. 피고발인은 성남시 중원구청장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2018. 5. 17. 피고발인이 패소하였고, 이에 성남시 중원구청장은 2018. 5. 25. 피고발인의 위법건축물을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가. 피고발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발인이 설치하였던 도축 시설들은 위법한 건축물 내지 시설물임이 인정되었고 이에 강제 철거까지 된 상황이라면 피고발인은 더 이상 개를 도살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존에 본인의 협약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강제집행 후 남겨진 개들을 “소유자로서” 적절하게 보호하고, 적어도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동물이 최소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시설의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비추어 알 수 있는데(참고자료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기본적으로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하며,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합니다([별표9] 제1항 나, 다).

라. “동물판매업자의 시설기준”을 보면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

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육설비는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
의 체장(體長, 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 및 1.5배 이상”으로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합니다([별표9] 제2항 나).

마. 그러나 피고발인은 면적이 35㎡도 되지 않는 임시 철망에 개
최소 60여 마리를 가두고 29℃가 넘는 기온에 사방을 공기도 통하지
않도록 둘러싼 후(증 제2호증 사진1-더위에 밀집되어 방치된 계류장내
최소 60여 마리의 개들, 아무 곳에도 물이나 사료를 준 흔적이 없음)물
조차 급여 없이 맵고 염분이 가득한 음식물폐기물만을 급여했습니다.
(증 제3호증 사진2-음식물류폐기물을 그대로 또는 갈아서 급여한 모습.
목이 말라 다가온 개들이 먹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

(1) 대집행이 있던 25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6.2℃, 26일은
29.6℃까지 한여름 날씨로 치솟았습니다. 대집행 모니터링에 참여했던
고발인 단체 활동가들 다수가 피부에 1도 화상을 입을 만큼 날씨가 매
우 더웠습니다.

(2)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서울축산 소재지)의 예상 최고 기온은
5월 30일 26℃, 6월 1일에는 30℃까지 올라가며 게다가 상대습도 또한
높아 최대 85%에 이르고 있습니다(증 제4호증 날씨 누리 경기도 성남
시 중원구 검색 결과).

(3) 체온이 높은 개의 특성, 개들이 밀집되어 있고 공기 유통이 되지 않는 점, 체온 조절을 위한 개들의 혈떡임, 습도가 매우 높은 날 씨임을 감안하면 개들이 있는 곳의 기온은 35℃를 훨씬 넘어서는 혹서의 상황일 것으로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4) 개의 체온은 평균 38~39도로 사람보다 2도 이상 높습니다. 개도 땀샘이 있긴 하지만 사람처럼 충분히 발달해 있지는 못하여 발바닥 부분에 약간 존재할 뿐입니다. 이렇듯 개는 뜨거워진 체온을 식히기 어려운 구조라서 더위에 약하고 힘들어합니다. 반려견 보호자들은 여름이면 개들을 더위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냉찜질팩을 사용하며 주변에서 조금만 더워도 찬 바닥에 배나 몸을 최대한 밀착하고 체온을 식히려는 개들을 볼 수 있습니다.

(5) 더위를 느낀 개는 입을 크게 벌리고 혀바닥을 길게 빼고 거칠게 숨을 쉬며 다량의 침을 분비하여 체온을 발산합니다. 침이 증발하는 과정에서의 기화열을 이용해 몸안의 열을 외부로 발산하며 몸 전체의 체온을 낮추는 것입니다. 더위에 혈떡이는 개의 입 부분에 손을 대어 보면 실제로 뜨끈뜨끈한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6) 이때 신선한 물을 다량 먹을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몸안의 수분을 보충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전혀 물을 공급하지 않아 고문했으며, 목이 마른 개들이 어쩔 수 없이 수분 섭취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을 먹게 되면 함유된 고농도의 염분 때문에 다시 더욱 목이 마르고 탈수에 빠지며 더위를 느끼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7) 심지어 피고발인이 임시 철망에 가둔 개들(도사혼종)은 평균 체고 약 54.6~59.6cm, 평균 체장 약 80~90cm에 이르는 대형견들로서, 체중이 대략 30Kg 정도입니다. 이러한 개들 60마리가 35㎡가 채 안 되는 임시철망에 한꺼번에 들어갈 경우 1마리당 0.5㎡정도에 불과한 공간만이 주어질 뿐이어서 서로 간 체온을 발산하기는 커녕 제대로 몸을 움직이거나 돌리기조차 불가능 합니다.

(8) 또한 성근 철망 바닥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도살의 공포 속에서 개들이 일부 합판이 깔린 부분에 모여 있고 이에 개들이 서로 몸이 겹쳐짐으로써 더욱더 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9) 피고발인의 개들이 소란 속에서 늘어져 있고 반응이 없는 이유는 공포심 또는 탈수 상태로 반응이나 행동능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신장이상까지 이를 수 있는 막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바. 동물보호법 제8호 제2항 제4호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

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2호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결국 피고발인의 행위는 동물을 혹한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동물보호법 제8호 제2항 제4호가 정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가. 피고발인은 성남시 중원구청장이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자 곧바로 동일한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여 개를 도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살 전 개를 위와 같이 학대하면서 이러한 장면을 지나가는 행인들로 하여금 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은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 보호할 동물보호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동물학대 행위를 일상적
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의법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 증 제1호증 성남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1. 증 제2호증 사진1(더위에 밀집되어 방치된 계류장내 최소 60여 마
리의 개들, 아무 곳에도 물이나 사료를 준 흔적이 없
음)
1. 증 제3호증 사진2(음식물류폐기물을 그대로 또는 갈아서 급여한
모습)
1. 증 제4호증 날씨 누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검색 결과
1. 추가 증거자료 등은 수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자료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